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5호 2012. 9. 11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2-4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3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2-824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4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2-801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2-802호 하동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2-803호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안 입법예고 10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 공보 전문(全文)을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를 통해 24시간 서비스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2) 제 345 호

하동군 고시 제2012 - 40 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3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31.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78-7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345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78-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3-6	200706 18	소재라는 옛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 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78-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5-3	200706 18	소재라는 옛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 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3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29	200706 18	새로 생긴 길이고 시장과 인 접하기 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1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17-15	200706 18	새로 생긴 길이고 시장과 인 접하기 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26-1	200706 18	하마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84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철성로 813-42	200706 18	도로구간 종점에 위치한 철 성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 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545-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아정길 53	200804 02	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 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2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51	200804 02	임진왜란때 양씨와 이씨가 피란하였다 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7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305	200903 02	매자와 신방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자연마을이름을 합성 하여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30-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세이리길 41	200903 02	계산마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들을 세이리들이라 하여 세이리길로 명명	

하 동 군 공 보

(4) 제 345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2 - 824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2. 9. .

하 동 군 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 획 기 간 : 2012. 9. 10 ~ 2012. 9. 19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진교면 관곡리 내	윤수복	총렵 (자력)	2012. 9. 10 ~ 2012. 9. 19	허가기간 내 멧돼지 10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하동군 공고 제-801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8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목표 달성하기 전 기금의 사업종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업 종기를 연장하여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함
3. 주요 골자 : 기금의 일몰제 적용 변경(안 부칙제2조)
- “이 기금의 사업 종기는 5년으로 한다”를 “이 기금의 종기는 10년으로 한다”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880-2343, FAX 880-2349, e-mail birani@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공 보

(6) 제 345 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2조 중 “이 기금의 사업 종기는 5년으로 한다.”를 “이 기금의 사업 종기는 10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38조 (생략)</p> <p>부칙 제1조 (생략)</p> <p>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기금의 사업의 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 ~ 제4조 (생략)</p>	<p>제1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기금의 사업의 종기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8) 제 345 호

하동군 공고 제 802호

하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8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2. 폐지 이유
 - 2006.06.22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되었으며
 - 2009.02.06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880-2343, FAX 880-2349, e-mail birani@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345 호

하동군 공고 제 803호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8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2. 폐지 이유
 - 2006.06.22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되었으며
 - 2009.02.06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880-2343, FAX 880-2349, e-mail birani@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